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82호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수송동 관할구역에 옥산면 당북리와 동홍남동 일부지역을, 옥산면 쌍봉리 관할구역에 개정면 옥석리 일부지역을, 옥산면 금성리 관할구역에 회현면 대정리 일부지역을, 신관동 관할구역에 미룡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5” 와 같다

제2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옥산면 당북리, 개정면 옥석리, 회현면 대정리, 미룡동, 동홍남동 중 제1조 제10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5” 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옥산면 당북리 → 수송동으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후 지번		
	행정동명	법정동명				행정동	법정동	지 번
	소 계		14필지		8,557			
1	옥산면	당북리	410-18	답	416	수송동	수송동	1,026
2	옥산면	당북리	410-19	답	983	“	“	1,027
3	옥산면	당북리	410-20	답	1,296	“	“	1,028
4	옥산면	당북리	410-21	답	1,601	“	“	1,029
5	옥산면	당북리	410-22	답	673	“	“	1,030
6	옥산면	당북리	410-23	답	2	“	“	1,031
7	옥산면	당북리	410-24	답	162	“	“	1,032
8	옥산면	당북리	410-25	답	301	“	“	1,033
9	옥산면	당북리	410-26	답	230	“	“	1,034
10	옥산면	당북리	410-27	답	158	“	“	1,035
11	옥산면	당북리	410-60	구	482	“	“	1,036
12	옥산면	당북리	410-65	구	329	“	“	1,037
13	옥산면	당북리	410-69	구	73	“	“	1,038
14	옥산면	당북리	1001	구	1,851	“	“	1,039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개정면 옥석리 → 옥산면 쌍봉리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후 지번		
	행정동명	법정동명				행정동	법정동	지 번
	소 계		14필지		17,080			
1	개정면	옥석리	664-1	답	4,279	옥산면	쌍봉리	1,166
2	개정면	옥석리	664-2	답	3,889	“	“	1,167
3	개정면	옥석리	664-3	답	2,734	“	“	1,168
4	개정면	옥석리	664-5	답	417	“	“	1,169
5	개정면	옥석리	664-6	답	426	“	“	1,170
6	개정면	옥석리	664-7	답	446	“	“	1,171
7	개정면	옥석리	664-8	구	1,980	“	“	1,172
8	개정면	옥석리	664-9	답	85	“	“	1,173
9	개정면	옥석리	664-10	답	45	“	“	1,174
10	개정면	옥석리	665-1	답	1,140	“	“	1,175
11	개정면	옥석리	665-2	답	1,560	“	“	1,176
12	개정면	옥석리	665-3	답	79	“	“	1,177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회현면 대정리 → 옥산면 금성리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후 지번		
	행정동명	법정동명				행정동	법정동	지 번
	소 계		2필지		5,240			
1	회현면	대정리	749-1	답	415	옥산면	금성리	337
2	회현면	대정리	749-2	답	1,695	"	"	338
3	회현면	대정리	749-3	답	2,532	"	"	339
4	회현면	대정리	749-4	답	535	"	"	340
5	회현면	대정리	749-5	답	63	"	"	341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동홍남동 → 수송동으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후 지번		
	행정동명	법정동명				행정동	법정동	지 번
	소 계		11필지		2,390			
1	홍남동	동홍남동	77-4	구	225	수송동	수송동	1,015
2	홍남동	동홍남동	77-5	대	3	"	"	1,016
3	홍남동	동홍남동	78-15	구	79	"	"	1,017
4	홍남동	동홍남동	78-16	대	20	"	"	1,018
5	홍남동	동홍남동	78-18	대	20	"	"	1,019
6	홍남동	동홍남동	78-19	구	3	"	"	1,020
7	홍남동	동홍남동	394-6	구	836	"	"	1,021
8	홍남동	동홍남동	394-7	대	963	"	"	1,022
9	홍남동	동홍남동	394-8	대	115	"	"	1,023
10	홍남동	동홍남동	394-9	답	66	"	"	1,024
11	홍남동	동홍남동	395-4	구	60	"	"	1,025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나운3동 (미룡동) → 나운3동(신관동)으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후 지번		
	행정동명	법정동명				행정동	법정동	지 번
	소 계		2필지		1,322			
1	나운3동	미룡동	287-51	대	661	나운3동	신관동	970
2	나운3동	미룡동	287-52	대	661	“	“	97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⑨ (생략)</p> <p>⑩ <신 설></p>	<p>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⑨ (현행과 같음)</p> <p>⑩ <u>수송동 관할구역에 옥산면 당북리 와 동흥남동 일부지역을, 옥산면 쌍봉 리 관할구역에 개정면 옥석리 일부지 역을, 옥산면 금성리 관할구역에 회현 면 대정리 일부지역을, 신관동 관할구 역에 미룡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 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 는 “별표5”와 같다</u></p>
<p>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 ⑨ (생략)</p> <p>⑩ <신 설></p>	<p>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 ⑨ (현행과 같음)</p> <p>⑩ <u>옥산면 당북리, 개정면 옥석리, 회 현면 대정리, 미룡동, 동흥남동 중 제1 조 제10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 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5”와 같다.</u></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83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1번 이·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읍면 총계란**을 “별표 1번” 과 같이 한다.

별표(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2번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중앙동 15통, 16통, 17통, 18통**을 “별표 2번” 과 같이 **신설**하고, **홍남동 3통의 조정과 26통, 27통** 관할 구역 **신설**을 “별표 3번” 과 같이 하며, **조촌동 3통의 조정과 48통, 49통, 50통** 관할 구역 **신설**을 “별표 4번” 과 같이 하고, **구암동 17통, 18통, 19통, 20통, 21통, 22통, 23통, 24통**을 “별표 5번” 과 같이 **신설**하며, **소룡동 1통**을 “별표 6번” 과 같이 **삭제**하고, **동 총계란**을 “별표 7번” 과 같이 한다.

- 별표 1 -

읍면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읍면총계	73	342	637	

- 별표 2 -

동명	통	반	관할지번
금암동	15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1호~3801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2호~3802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3호~3503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4호~3504호) 상가 전체 (101호~117호, 201호~215호)
	16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2동(401호~2802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2동(2902호~4003호),103동(401호~1501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3동(1601호~603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3동(703호~3504호)
	17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4동(401호~3202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4동(3302호~2904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4동(3004호~3504호),105동(401호~1802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5동(1902호~4003호)
	18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6동(401호~2802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6동(2902호~4003호),107동(401호~1501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7동(1601호~603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7동(703호~3504호)
동계	18	78	

- 별표 3 -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대명동	3	1	385의 1, 5, 8~17, 19~24, 50, 387의 1~9, 11~14, 17~18	
		2	386의 1~8, 10~15, 22~32, 36~44	
		3	388의 1~7, 10~11, 13~19	
		4	384의 24~41, 44~46, 48, 55~58, 60, 62~65	
		5	대명동 384의 1~3, 5~12, 42, 47, 49~50, 대명동 384의 14~16, 18~22, 43, 52, 54	
	26	1	405 천년가더스테이 101동 전체	
		2	405 천년가더스테이 102동 전체	
		3	405 천년가더스테이 103동 전체	
	27	1	405 천년가더스테이 104동 전체	
		2	405 천년가더스테이 105동 전체	
		3	405 천년가더스테이 106동 전체, 상가	
	동 계	27	124	

- 별표 4 -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조촌동	3	1	51, 86, 91~92, 94, 96, 98, 100~103, 105~108, 132~134	
		2	136, 138, 140, 183~184, 323, 351, 924~925	
		3	910~916	
		4	917~921	
	48	1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1동 101~1304호)	
		2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1동 1401~2904호)	
		3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2동 201~1404호)	
		4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2동 1501~2901호)	
	49	1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3동 101~1404호), 상가	
		2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3동 1501~2902호)	
		3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4동 101~1404호)	
		4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4동 1501~2904호)	
	50	1	748, 748의 1(동산연립주택)	
		2	747, 747의 16(삼성연립주택)	
		3	922~923	
		4	190~191, 880	
	동 계	50	211	

- 별표 5 -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내 흥 동	17	1	925 오션클래스 101동 전체, 상가
		2	925 오션클래스 102동 전체
		3	925 오션클래스 103동 201호 ~ 2402호
		4	925 오션클래스 103동 303호 ~ 2404호
	18	1	925 오션클래스 104동 101호 ~ 2503호
		2	925 오션클래스 104동 104호 ~ 2505호
		3	925 오션클래스 105동 101호 ~ 2503호
		4	925 오션클래스 105동 104호 ~ 2505호
	19	1	925 오션클래스 106동 101호 ~ 2303호
		2	925 오션클래스 106동 304호 ~ 2305호
		3	925 오션클래스 107동 301호 ~ 2503호
		4	925 오션클래스 107동 104호 ~ 2505호
	20	1	925 오션클래스 108동 전체
		2	925 오션클래스 109동 전체
		3	925 오션클래스 110동 전체
		4	925 오션클래스 111동 101호 ~ 2102호
		5	925 오션클래스 111동 103호 ~ 2104호
	21	1	927 내흥7LH아파트 701동 301호 ~ 2003호
		2	927 내흥7LH아파트 701동 104호 ~ 2006호
		3	927 내흥7LH아파트 701동 307호 ~ 2010호
	22	1	927 내흥7LH아파트 702동 101호 ~ 1904호
		2	927 내흥7LH아파트 702동 105호 ~ 1908호
		3	927 내흥7LH아파트 702동 109호 ~ 2012호
	23	1	927 내흥7LH아파트 703동 301호 ~ 1904호
2		927 내흥7LH아파트 703동 305호 ~ 1908호	
3		927 내흥7LH아파트 703동 109호 ~ 2012호	
24	1	927 내흥7LH아파트 704동 301호 ~ 2003호	
	2	927 내흥7LH아파트 704동 304호 ~ 2006호	
	3	927 내흥7LH아파트 704동 307호 ~ 2010호, 상가	
동 계	24	116	

- 별표 6 -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소룡동	1	1	삭 제
		2	
		3	
		4	
		5	
동계	33	131	

- 별표 7 -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동총계	497	2,1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이·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현					개				
행					정				
읍면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읍면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읍면총계	73	341	637			73	342	637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현				개			
행				정			
동명	통	반	관할구역	동명	통	반	관할구역
금암동				금암동	15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1호~3801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2호~3802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3호~3503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4호~3504호) 상가 전체 (101호~117호, 201호~215호)
					16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2동(401호~2802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2동(2902호~4003호), 103동(401호~1501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3동(1601호~603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3동(703호~3504호)
					17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4동(401호~3202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4동(3302호~2904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4동(3004호~3504호), 105동(401호~1802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5동(1902호~4003호)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금암동				금암동	18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6동(401호~2802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6동(2902호~4003호), 107동(401호~1501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7동(1601호~603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7동(703호~3504호)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대명동				대명동	26	1	405 천년가더스테이 101동 전체
						2	405 천년가더스테이 102동 전체
						3	405 천년가더스테이 103동 전체
					27	1	405 천년가더스테이 104동 전체
						2	405 천년가더스테이 105동 전체
						3	405 천년가더스테이 106동 전체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조촌동	3	1	51, 86, 91~92, 94, 96, 98, 100~103, 105~108, 132~134, 136, 138, 140, 183~184, 190~191, 323, 351, 880, 922~925	조촌동	3	1	51, 86, 91~92, 94, 96, 98, 100~103, 105~108, 132~134	
		2	748, 748의 1 (동산연립주택)			2	136, 138, 140, 183~184, 323, 351, 924~925	
		3	910~921			3	910~916	
		4	747, 747의 16(삼성연립주택)			4	917~921	
						48	1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1동 101~1304호)
							2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1동 1401~2904호)
							3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2동 201~1404호)
							4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2동 1501~2901호)
						49	1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3동 101~1404호), 상가
							2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3동 1501~2902호)
							3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4동 101~1404호)
							4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4동 1501~2904호)
						50	1	748, 748의 1(동산연립주택)
							2	747, 747의 16(삼성연립주택)
							3	922~923
							4	190~191, 880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구암동 내홍동	1~16	87																		현행과 같음									
내홍동				내홍동				17	1		925 오션클래스 101동 전체, 상가	18	1		925 오션클래스 104동 101호 ~ 2503호	19	1		925 오션클래스 106동 101호 ~ 2303호	20	1		925 오션클래스 108동 전체						
									2		925 오션클래스 102동 전체		2		925 오션클래스 104동 104호 ~ 2505호		2		925 오션클래스 106동 304호 ~ 2305호		2		925 오션클래스 109동 전체						
									3		925 오션클래스 103동 201호 ~ 2402호		3		925 오션클래스 105동 101호 ~ 2503호		3		925 오션클래스 107동 301호 ~ 2503호		3		925 오션클래스 110동 전체						
									4		925 오션클래스 103동 303호 ~ 2404호		4		925 오션클래스 105동 104호 ~ 2505호		4		925 오션클래스 107동 104호 ~ 2505호		4		925 오션클래스 111동 101호 ~ 2102호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내홍동				내홍동	21	1	927 내홍7LH아파트 701동 301호 ~ 2003호
						2	927 내홍7LH아파트 701동 104호 ~ 2006호
						3	927 내홍7LH아파트 701동 307호 ~ 2010호
					22	1	927 내홍7LH아파트 702동 101호 ~ 1904호
						2	927 내홍7LH아파트 702동 105호 ~ 1908호
						3	927 내홍7LH아파트 702동 109호 ~ 2012호
					23	1	927 내홍7LH아파트 703동 301호 ~ 1904호
						2	927 내홍7LH아파트 703동 305호 ~ 1908호
						3	927 내홍7LH아파트 703동 109호 ~ 2012호
					24	1	927 내홍7LH아파트 704동 301호 ~ 2003호
						2	927 내홍7LH아파트 704동 304호 ~ 2006호
						3	927 내홍7LH아파트 704동 307호 ~ 2010호, 상가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소룡동	1	1	1019의 1	소룡동	1	1	삭 제
		2	1019의 1			2	
		3	1019의 42			3	
		4	1019의 44, 46			4	
		5	1019의 6, 45			5	
	2~16	63			2~16	63	
동총계	480	2,061		동총계	497	2,124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84호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를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3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 을 “위촉직 위원” 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위원은 관련 회의 시 10인 이내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안전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안전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를 신설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u></p> <p>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u>30인 이내의 위촉직</u>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③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의2(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p>	<p><u>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u></p> <p>제2조(구성) ①----- ----- <u>위촉직</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촉위원은 관련 회의 시 10인 이내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u></p> <p>⑤<u>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u> <u>를 신설한다.</u></p> <p><u><삭제></u></p>

있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
일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하
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
촉된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
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
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
다.

제3조(자문, 심의, 연구, 결정) 위
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결정한다.

1. (생 략)
2.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
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
회, 협의회(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3. ~ 5. (생 략)

제3조(자문, 심의, 연구, 결정)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85호

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 를 “**군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시민창안제도**” 를 “**시민제안제도**” 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시세입**” 을 “**시 세입**”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접수된**” 을 “**제출된**” 으로, “**경우 제안자에게 필요한 상당**” 을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내에 보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차**” 를 “**제안자에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2항 중 “**9인이내**” 를 “**14인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 을 “**본청 국장**” 으로 한다.

제14조 중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 을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

록” 으로, “의장에” 를 “디자인에” 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로 한다.

제15조 중 “의장등록” 을 “디자인등록”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의 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아이디어 및 지정된 과제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u>시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제안의 내용) 제안내용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u>시세입 증대 방안</u> 5. (생략) <p>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시장은 <u>접수된 제안에 흠이 있거나 구체적인 보완 사항이 요구 될 경우 제안자에게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내에 보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p>	<p><u>군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 ----- ----- ----- ----- <u>시민제안제도</u>----- ----- -----.</p> <p>제3조(제안의 내용)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u>시 세입</u> ----- 5. (현행과 같음) <p>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 <u>제출된</u> ----- ----- <u>경우에는</u> <u>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u> <u>의</u> ----- <u>제안자에게</u> ----- -----.</p>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 자가 되며 위원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산시 의원 2인(상임위원위원회 별 위원 각1인)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⑤ (생략)

제14조(권리의 승계) 제안이 특별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는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②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14인 이내 -----.

③-----

----- 본청 국장-----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권리의 승계) -----

-----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
--- 디자인에 -----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권리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군산시에 승계한다.

제15조(출원) 제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권리의 양도를 받은 시장
은 그 제안에 대하여 시장 명의
로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
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출원) -----

----- 디자인
등록-----.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결산 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86호

군산시 결산 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결산 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결산감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군산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감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 정수) 결산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자격) ① 감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2년 이

- 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4조(선임 및 위촉) ①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별이 감사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으로 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감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의장은 선임된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결산개요
- 2. 세입·세출의 결산
- 3. 재무제표
-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6조(결산검사기간 및 감사의견서 제출) ① 감사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산검사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본회의에서의 답변) ①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협조) 시장은 감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시장은 감사위원회에게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감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별표 2 에서 정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며 의원을 제외한 감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답변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시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한다.

1. 시에서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 당시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라북도 도세 및 시세를 체납한 때

4. 질병 그 밖에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회는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1.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감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감사위원을 해촉 한다.

제12조(감사위원의 제재) ① 감사위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임 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의장은 감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 축 장

○ ○ ○

군산시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의 회 의 장 (인)

[별표 2]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금 액
일 비	100,000원/1일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여비 정액표 구분란 제1호 상당액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87호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21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25년 12월 31일</u>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88호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군산형 일자리 사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과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이하 “군산형 일자리”라 한다.)”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군산·새만금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의 다양한 경제주체 간에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2. “노·사·민·정”이란 지역의 노동자·사용자·주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는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을 위한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4.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이라 함은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상생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노·사·민·정 주체간 준수사항을 체결함을 말한다.

가. “적정임금” 이란 헌법에 보장된 임금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임금수준, 임금체계 등 상생협의회가 합의한 협약임금을 말한다.

나. “적정노동시간” 이란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상생협회의 합의사항을 통해 적용한 노동시간을 말한다.

다. “노사책임경영” 이란 노사합의에 따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을 말한다.

라. “원·하청관계 개선” 이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마. “상생협력사업” 이란 참여주체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복리 증진, 생산성 향상 등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군산형 일자리 기업” 이란 군산형 일자리 핵심의제에 대하여 노·사·민·정 등의 주체와 상호 협약에 참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노·사를 비롯하여 상생협의회에 참여하는 노사민정의 각 기관과 단체 등이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군산형 일자리 모델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 2. 군산형 일자리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 3.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 4.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발굴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
- 5.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 6.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의 이행 및 사업의 성과평가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산형 일자리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창출 및 촉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창출 및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군산형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 컨설팅, 연구사업
- 2.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창출·확산 및 정착을 위한 사업
- 3.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및 핵심의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4. 군산형 일자리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지원
- 5.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 6.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지역생산품 마케팅 지원
- 7. 고용안정·유지·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
- 8.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갈등해소, 노사상생프로그램
- 9. 노동복지 증진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
-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상생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노동자·사용자 대표
2. 지역 노·사·민·정 대표
3.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학·연·정 협력체계 구성을 위한 기관 및 단체의 대표
5. 전라북도 및 지역 내 고용노동관서·중앙행정기관 대표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④ 상생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 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상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창출 및 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3.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4. 군산형 일자리 육성 시책 발굴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 5. 군산형 일자리 기업 선정 및 취소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 ① 상생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상생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생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상생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군산형 일자리 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선정된 기업이 폐업,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생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기금) 시장은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창출 및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라북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전라북도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군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89호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숲계장” 을 “업무담당 계장” 으로 한다.
제12조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5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도시숲계장</u>으로 한다.</p> <p>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2월 31일</u>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업무담당 계장</u>-----.</p> <p>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25년 12월 31일</u>----- ----- ----- -----.</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90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을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장**” 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 으
로, “**문화정책계장**” 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계장**”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5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영) ①·②(생략)	제5조(기금의 관리·운영) ①·②(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③ ---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 --- ----- -----.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u>문화예술과장</u> 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u>문화정책계장</u> 이 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 ----- - <u>문화예술진흥기금</u> 업무담당과장----- --- <u>문화예술진흥기금</u> 업무담당계장---.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 ----- <u>2025년 12월 31일</u>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91호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산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 자하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발전과 지역적·국제적인 문화 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13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조성·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3.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5.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문화협치 기반마련)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군산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문화예술 공간 확보 및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제13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군산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4항의 사항
-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3.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4.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5.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6.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5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및 공원녹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품위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1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위원

회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문화도시센터

제22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또는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업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서류와 관련 장부의 검사 및 사업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하여 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의 횡령 등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수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관리 총괄
- 2. 문화도시 조성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 3.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집행 및 결산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 2. 문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는 세부 실행사업
-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
-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보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92호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로장애인과장**” 을 “**자활기금담당과장**” 으로 하고,
” **자활복지계장**” 을 “**자활기금담당계장**” 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u>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복지계장으로 한다.</u></p> <p>제15조(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자활기금담당과장-----</u> -----<u>자활기금담당계장--</u> -----.</p> <p><삭 제></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93호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행규칙” 을 “법 시행규칙” 으로, “시행규칙 제 23” 을 “법 시행규칙 제23” 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제2항 중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 를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을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제11조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개 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 인, 종교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 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 제2 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u>시행규칙 제23조에</u>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4조(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 ----- ----- ----- “<u>법 시행</u> <u>규칙</u>” ----- ----- <u>법 시행규칙 제23</u>-- ----- -----.</p>
<p>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 는 아동으로 한다. 1. <u>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u> 2. <u>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u> <u>아동</u> 3. <u>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u> <u>의 아동</u> 4. <u>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u> <u>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u> <u>아동</u> 5. <u>그 밖에 센터의 보호와 지원이</u> <u>필요한 아동</u></p>	<p>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 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 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한다.</p>
<p>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생 략)</p>	<p>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 <u>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 <u>가</u>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군산시 지 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을 위하여 <u>위원회</u>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 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u>위원장 및 부위원장</u>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5. (생 략)</p> <p>6. <u>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 터장</u></p> <p>7. · 8. (생 략)</p> <p>④ · ⑤ (생 략)</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5. (생 략)</p> <p>6. <u>기타</u>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 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p>	<p>②----- 「<u>군 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u>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u>----- -----.</p> <p>②----- ----- <u>위원 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u>----- -----.</p> <p>③-----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지역아동센터 시설장</u></p> <p>7. · 8.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 -----</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94호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 근로자를 말한다)로 고용이 가능한 만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한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련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동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군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노동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 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

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청소년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이 보호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 3.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
- 4.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동 전문가, 공인노무사, 청소년 관련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 등 전문 상담 인력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센터에서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는 등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 업무담당,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권의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95호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 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3년 이내” 를 “5년으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조직) ① (생 략)</p> <p>② <u>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비상근도 가능하다. 다만 센터장이 타 직종(영리업무 또는 타시설장 등)을 겸직하여 상근이 어려운 경우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활동비만 지급한다.</u></p> <p>③ (생 략)</p>	<p>제5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센터장은 상근 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운영) ① · ② (생 략)</p> <p>③ <u>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u> 하고 재 위탁 할 수 있다.</p> <p>④ · ⑤ (생 략)</p>	<p>제9조(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5년으로</u>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96호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 ----- 2025년 12월 31일----- ----- -----.</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97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

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계유해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폐기물로 폐농약, 페페인트, 폐형광등, 수은, 폐의약품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 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책무를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능률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 기타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청결유지 명령에 의해 1개월 범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등은 법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공한지 등에 폐기물 발생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담장 설치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의 이행)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유자 등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 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소유자 등이 명령 기한 내에 적치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대집행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청결유지 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이 기록된 안내전단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시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

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장은 **소유자 등이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 처리하여야 한다.

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 ·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배출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 · 오지 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호수기준은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이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①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적환장설치) ①시장이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설치하게 할 때에는 시민편의도, 쓰레기 발생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설치된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장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중 일정기간 쓰레기 운반처리가 곤란한 지역에 한하여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 및 처리

제13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처리비용은 배출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찾길사고 동물사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체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수집·운반·소요물량·대행기간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차폐시설)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

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초래, 작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작업의 효율성,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증진,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태
4.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6조(대행자 사고가 있을 때)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등은 예외로 한다.

1.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2. 소각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마대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마대에 담기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대형폐기물로 간주하여 별표 1을 기준으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한다.

- 3.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하여야 한다.
- 4.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앞면에 시장이 지정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고 배출자의 주소·성명·배출일자 및 폐기물명·수량·규격 등을 시장에 신고하거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신고 후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부착이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따로 묶어서 신고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 5.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2에 따라 분리한 후 시장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 6.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및 마대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통해 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 7. 생활계 유해 폐기물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고 유해 특성을 제거,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배출하여야 하며, 폐의약품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약국이나 보건소에 모아 배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방법·수거일시·수거장소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출신고접수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3장 종량제봉투 제작 및 수수료 등

- 제18조(종량제 봉투 종류 및 재질) ①종량제 봉투는 소각용으로 사용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 ②일반용 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시장이 선정하되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분홍색(반투명),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⑤종량제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19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산시 휘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형식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옅은 보라색으로 제작한다.

②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하고,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④시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①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 2.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 3. 종량제 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4. 적정판매이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③종량제 봉투(재사용 종량제봉투 포함)의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①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모형은 시장이 정하되, 군산시 심벌마크,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납부필증의 형식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시장은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납부필증의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약정 체결사항은 제25조제5항의 사항을 같이 적용한다.

③납부필증은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일정률의 판매이익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종량제마대 제작) ①종량제 마대(이하 “마대”라 한다.)는 매립용으로 사용하며 시장이 제작한다.

②마대의 종류 및 규격, 모형, 재질은 시장이 정하되 폴리프로필렌 주원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마대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종량제마대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종량제 봉투와 마대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와 마대는 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읍·면·동장 또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골목길 쓰레기 및 무단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본청·사업소 및 읍면동이 참여하는 일제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공공용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종량제 봉투와 마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 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 및 대행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시장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와 마대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종량제 봉투(마대)의 판매·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 봉투(마대)의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위탁 및 대행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 및 대행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군산시로 전입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

제봉투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20매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하여 군산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거나 별표 3호의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스티커” 를 교부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소의 지정) ①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제27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 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매자는 모조 또는 불법 제작한 종량제봉투 등을 진열, 판매 하여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유통을 발견 시 이를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을 공급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시장이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공급을 대행업자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3. 기타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8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지 아니할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였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4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29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납부필증의 판매금액에 의하여 징수하되 **규격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마대)에 넣기 곤란한 다량의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이 허용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5. **제9조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수수료는 가구당 1년에 1,500원으로 하며, 가구별 금액을 합산하여 마을단위로 부과하고 징수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의한다.
 - 나. **제34조에** 규정된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가 마을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부과대상 가구에서 제외하며, 종량제 봉투 무료공급 대상

에서도 제외한다.

다. 수수료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수료를 수시로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0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종량제 봉투, 마대 및 대형폐기물수수료의 징수방법은 시장과 당해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3조(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

-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 2. 기타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1종)
- 2.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5조(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의 매수)

①종량제 봉투판매소는 쓰레기배출자가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5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제36조(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시장은 “군산시 매립장” (이하 “매립장” 이라 한다)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이하 “에너지화시설” 이라 한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7조(시민의 출입) 시장은 시민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을 요구 할 때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38조(폐기물의 반입허용) ①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군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말한다.

②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생활계유해폐기물은 법 제13조의 규정과 이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반입한다.

제39조(출입 허용차량) ①폐기물처리시설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영 제7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소지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40조(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 ①반입되는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의 계량은 정문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시장은 등록된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계량, 기록, 관리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41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2. 기타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곤란한 경우

②시장은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이유 등을 3일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출입 허용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지정폐기물 등의 반입금지) 시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및 유해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반입된 폐기물은 반입증서 확보 후 즉시 반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회사가 수집 운반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의 반입자는 시장이 된다.

제44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하천하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거한 폐기물
- 2. 자연환경정화시 수거한 폐기물
-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45조(수수료납입 및 징수방법) 수수료의 납부는 징수관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46조(수수료사용) 징수된 수수료 수입은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2. 재활용사업
- 3. 자원재생산업 육성사업
- 4.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
- 5. 기타 시장이 청소행정 수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7조(준용)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및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의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대집행) ①시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자가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제1항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9조(운영규칙)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1조(의견진술)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5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5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59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포상금지급) ①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의 80퍼센트 한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8에 의한다.

제61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제1호에서 별표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량제봉투 및 마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관 또는 유통되는 기존 중량제봉투(마대)는 그 잔량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이 조례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병행하여 유통·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품 명	규 격	가 격 (원)
가습기	모든 규격	무 상
개인용컴퓨터	모든 규격	무 상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무 상
냉장고	모든 규격	무 상
믹서	모든 규격	무 상
복사기	모든 규격	무 상
비디오 플레이어	모든 규격	무 상
선풍기	모든 규격	무 상
세탁기	모든 규격	무 상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무 상
에어컨디셔너	모든 규격	무 상
연수기	모든 규격	무 상
오디오	모든 규격	무 상
음식물처리기	모든 규격	무 상
이동전화단말기	모든 규격	무 상
자동판매기	모든 규격	무 상
전기다리미	모든 규격	무 상
가스·전기레인지	모든 규격	무 상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전기밥솥	모든 규격	무 상
전기비데	모든 규격	무 상
가스·전기 오븐	모든 규격	무 상
전기 정수기	모든 규격	무 상
전기히터(팬히터)	모든 규격	무 상
청소기	모든 규격	무 상
탈수기	모든 규격	무 상
텔레비전	모든 규격	무 상
팩시밀리	모든 규격	무 상
프린터	모든 규격	무 상
기타 가전제품	모든 규격	무 상
금 고	대 형	18,000
	소 형	12,500
난 로	대 형	5,500
	소 형	3,500
마 네 킹	개 당	3,500
매 트 리 스	1 인 용	5,500
	2 인 용 이 상	10,000
문 갑	모 든 규 격	2,500
벽 시 계	대 형	4,500
	소 형	2,500
변 기	개 당	3,500
보 일 러 통	대 형	10,000
	중 형	5,500
	소 형	2,500
보 행 기	개 당	2,500
서 랫 장	5 단 이 상	4,500
	4 단 이 하	2,500
세 면 기	개 당	3,500
소 파	대 형 5 ~ 6 인 용	10,000
	소 형 3 ~ 4 인 용	5,500
	1 인 용 (개 당)	2,500
수 족 관	대 형	12,500
	소 형	4,500
식 탁	6 인 용 이 상	5,500
	6 인 용 미 만	4,500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신 발 장	모 든 규 격	2,500
싱 크 대	대 형	4,500
	소 형	2,500
오 락 기 기	대 형	6,500
	소 형	3,500
온 풍 기	대 형	12,500
	소 형	10,000
욕 조	개 당	4,500
유 모 차	개 당	2,500
의 류 (이 불 등)	마 대 당	2,500
의 자	대 형	3,500
	중 형	2,500
	소 형	1,500
장 룡	1 2 0 cm 장 1 쪽	18,000
	9 0 cm 장 1 쪽	12,500
장 식 대	모 든 규 격	4,500
장 판	1 묶 음 (2 0 kg)	2,500
재 봉 틀	개 당	2,500
진 열 장	대 형	5,500
	소 형	3,500
찬 장	모 든 규 격	3,500
책 상	양 수 , 대 형	5,500
	편 수 , 소 형	4,500
침 대	1 인 용	12,500
	2 인 용 이 상	18,000
카 페 트	1묶음(20kg) 초과	4,500
	1묶음(20kg) 미만	3,500
캐 비 닛	대 형	6,500
	소 형	4,500
칸 막 이 판 벨	개 당	2,500
피 아 노	어 프 라 이 트	12,500
	그 랜 드	18,000
화 장 대	모 든 규 격	3,500
폐 소 화 기	모 든 규 격	3,500

* 상기의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7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문 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포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후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 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 알미늄캔 (음식용류) - 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 - 건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병 - 농 약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꽂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 철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 (공기구, 못, 철사,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 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6.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이나 기름, 흙 등 이 물질이 묻지 않는 의류 -반드시 개어 끈으로 묶어 배출 -이불,솜,커텐 등은 재활용이 안됨

[별표 3]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스티커(제25조제6항관련)

시 - 마크

전입자 확인 인증

이 종량제 봉투는 군산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군 산 시 장

☎문의전화 454-3450

○ 제작사양

- 가로 20cm × 세로 14cm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

[별표 4]

중량제봉투와 매립용 마대의 표준규격 및 세부사항
(제18조제5항 및 제19조, 제20조, 제24조 관련)

【소각용】

용도	봉투용량 (l)	봉투규격(cm) (가로 × 세로)	호칭두께 (mm)	
			저밀도	고밀도
일 반 용	5	26 × 46.5	0.030	0.025
일 반 용	10	33 × 56.5	0.030	0.025
일 반 용	20	42 × 69.5	0.035	0.030
일 반 용 공 공 용	50	56 × 91.5	0.045	0.040
일 반 용	75	65 × 103.5	0.050	0.045

용도	용량	높이 (cm)	너비 (cm)	담는선 까지 길이(cm)	묶는선쪽 (cm)	묶는선 길이(cm)	손잡이끈 폭(cm)
재사용	10 l	53.5	36 (24+6×2)	12	7	12	5
재사용	20 l	65.3	45 (31+7×2)	15	8	15	6

【매립용】

구 분	용량(l)	봉투규격(cm) (가로 × 세로)	밀 도(올5cm) 경사 × 위사	섬도(D) 경사·위도
매립용	20	42 × 69.5 (±2)	20 × 20 (±2)	850(± 10%)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시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L)

- 일반 용 -

Flammable Trash Only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군 산 시 장

연락처 : 자원순환과
(☎454-34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시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L)

- 공 공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 산 시 장

연락처 : 자원순환과
(☎454-34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주) 1. 종량제봉투(마대)의 종류에 따라 “일반재사용(소각대상)”, “매립용”, “공공용”으로 각각 한글과 외국어 (영어, 중국어 등)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종량제봉투 종류별로 문안과 도안은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전면 또는 후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에 필요한 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시 - 마크

매립용 종량제마대(L)

Non-Flammable Trash Only

- 일 반 용 -

1. 매립용 쓰레기(뺨,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만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2. 매립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군 산 시 장

연락처 : 자원순환과
(☎454-34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손잡이형)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 일 반 용 -
Flammable Trash Only



(시 로고) 군 산 시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빠,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 이 봉투는 유통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계산대에서 판매되며, 상품을 담은 1회용 봉투로 사용하시고, 가정에서는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 업체 고유 번호
- 문의사항 또는 품질 인증 표시
군산시 자원순환과 454-3450

[별표 5]

종량제봉투(마대) 공급·판매가격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용량 (l)	공급가격		판매가격	
	소각용 (원)	매립용 (원)	소각용 (원)	매립용 (원)
5	176	-	200	-
10	264		300	
20	440	880	500	1000
50	1,100	-	1,250	-
75	1,628	-	1,850	-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L\text{당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L) + \text{주민부담율목표치} +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이익}$$

- (주) 1) 쓰레기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 가격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4) 판매수수료 요율은 12%를 기준으로 적용 $\langle(L\text{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L) \times \text{주민부담율목표치} + \text{봉투제작비}) \times 0.12\rangle$ 산정하여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5) 판매가격은 원단위에서 절상함
- 6) 공급가격은 산출가격에 판매가격의 원 단위 절상으로 인한 차액을 포함 결정

[별표 6]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형식(제22조제3항관련)



NO 005-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금오천원(₩500)
 군산시청



NO 01-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금일천원(₩1,000)
 군산시청



NO 02-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금이천원(₩2,000)
 군산시청



NO 03-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금삼천원(₩3,000)
 군산시청



NO 05-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금오천원(₩5,000)
 군산시청



NO 10-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금일만원(₩10,000)
 군산시청

종 류	지 질	규 격
5백원, 1천원,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초특강스티커	12.5*10cm

[별표 7]

설치대상 및 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재활용품 보관 창고

구 분	기 준	설치규모	조적조스라브 또는 외증	비 고
공동주택	100~300세대 미만	20m ²	“	
	300~500세대 미만	50m ²	“	
	500세대 이상	60m ²	“	
기타건물	1천m ² 이상~3천m ² 미만	6.6m ²	“	
	3천m ² 이상	9.9m ²	“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구 분	기 준	설치규모	재 질	비 고
공동주택	50세대미만	재활용함(4종이상)1조	스틸 스테인레스 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	건물용도에 따라 추가확보 조치가가능
	50세대 초과시마다	1조씩 추가확보	“	“
기타건물	1천m ² 이상~2천m ² 미만	재활용함(4종이상) 2조이상	“	“
	2천m ² 이상~3천m ² 미만	재활용함(4종이상) 3조이상	“	“

쓰레기 수거박스

구 분	기 준	설 치 규 모	재 질	비 고
공동주택	100세대이상~500세대 미만	쓰레기 수거 C/T 박스 1개	스틸	건물용도에 따라추가확보 조치가가능
	500세대 이상	쓰레기 수거 C/T 박스 2개	“	“
기타건물	3천㎡이상~66천㎡ 미만	쓰레기 수거 C/T 박스 1개	“	“
	66천㎡이상	쓰레기 수거 C/T 박스 2개	“	“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분	기준	설치규모	재질	비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 용기 (120리터)	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	
	20세대 초과 시	1개씩 추가확보	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	

[별표 8]

과태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0조제2항 관련)

행 위	과태료 (천원)	포상금상한 (천원)
○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 <삭제2007.01.02>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0	160
○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0	16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0	4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0	8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0	8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500	4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0	8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0	400

※ 위 지급기준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9]

청결유지 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제6조제4항관련)

청결 유지 명령 대상 행위	명령 내용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	○ 대청소 실시 기간 내용
2. 토지·건물내 쓰레기는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 토지·건물내 적치·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 토지·건물 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 무단소각에 이용한 기구·장치의 철거 ○ 소각잔재물의 수거 처리 ○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 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설치 ○ 쓰레기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내 출입 통제 조치 - 철조망 또는 담장 설치 등
	○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함 설치 및 청소체계 유지 관리
5.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별지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대장

연번	접수일자	신고인			종 류	규 격	수 량	수 수 료			수거일자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고지금액	고지일자	납부일자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210mm×297mm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			영수필통지서 (시통보용)			영 수 증 (개인통지용)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	항목	세입과목	관	항목	세입과목	관	항목	세입과목	관	항목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수납납자도장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수납납자도장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수납납자도장 취급자		

(별지 제4호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발행 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관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관 사실	일 시		내용				
위관 법률	제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관행위자 서 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특이사항							

(별지제4호서식)
(을)

(수남은행 보관용)

과태료 납부서

발행 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남은행 :

군 산 시 장

수남날자도장

(별지제4호서식)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발행 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 사실	일 시		내용				
위반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 서 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징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 산 시 장

(별지제4호서식)
(병)

(개인통지용)

과태료납부영수증

발행 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취급자인

(별지제4호서식)
(무)

(시통보용)

과태료 납부영수필 통지서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자도장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금액		⑦ 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간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군 산 시 장 ㉠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과 태 료	④ 고지일자	⑤ 과 태 료 금 액	
처 분 내 역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제9호서식)

(시동보용)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 번호	②통지서 번호	③과태료 처 통지일	④독촉장 발부일	납부기간		⑦금 액	납부의무자		⑩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 의 제기일	⑫법 원 통보일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기금조성및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98호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관리 등에”를 “관리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 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군산시 매립장”과 “군산시 폐자원에너

지화시설”을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조성한다**”를 “**조성하며 2호의 반입 수수료는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반입 처리된 폐기물량과 반입 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설정 관리한다.**”를 “**설정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관리·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영 제18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거 군산시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 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2항 중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원사업 결정**”을 “**지원 사업 결정**”으로, “**지원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를 “**지원 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천재지변등**”을 “**천재지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70%범위내**”를 “**70%범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종료시**”를 “**지원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종료 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1을 제7조의2로 한다.

제8조 중 “**두되,기금운용관은 복지관광국장**”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자원순환과장으로**”를 “**업무담당과장으로**”로 한다.

제11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1조에서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

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4.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아동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7.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료 감면액 또는 감면비율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 결정한다.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료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3. 그 밖에 당해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 받은 일부 시설인 상가시설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⑤시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⑥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 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의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지원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p>	<p><u>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 “지원 사업 “ -----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등에-----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 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군산시 매립장”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금의 조성)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생 략)</p> <p>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p> <p>3. (생 략)</p> <p>제4조(주민지원 기금운용, 관리 등) ① 시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 관리한다. <단서 신설></p> <p>② 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집행할 수 있다.</p> <p>제6조(지원사업 결정) ①시장은</p>	<p><u>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u></p> <p>제3조(지원금의 조성) ----- ----- <u>각 호-----조성하며 2호의 반입 수수료는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 반입 처리된 폐기물량과 반입 수수료를 곱한 금액-----</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주민지원 기금운용, 관리 등) ① ----- ----- ----- <u>설정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관리·운영한다. 단, 영 제18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거 군산시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u>지원 사업</u>----- ----- -----.</p> <p>제6조(지원사업 결정) ①-----</p>

현 행	개 정 안
<p>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u>지원사업 결정</u>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u>지원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u>하여야 한다.</p>	<p>----- ----- <u>지원 사업 결정</u>----- ----- ----- ----- ----- <u>지원 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u>----- -----</p>
<p>②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본항신설 2004.04.16.></p>	<p>②----- ----- ----- <u>각 호</u>----- -----</p>
<p>1. <u>천재지변</u>등의 재해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생 략)</p> <p>3. 주민지원사업비중 <u>70%범위</u>내에서 가구별 지원사업의 종류와 비율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다만 공동사업으로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u>천재지변 등</u>----- -----</p> <p>2. (현행과 같음)</p> <p>3. ----- <u>70%범위 내</u>----- ----- -----</p>
<p>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u>지원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 종료시</u>까지로 한다.</p> <p>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p>	<p>③----- <u>지 원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종료 시</u>-----.</p> <p>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p>

현 행	개 정 안
<p>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u>지원사업</u>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p>	<p>----- ----- <u>지원 사업</u> ----- ----- ----- ----- -----.</p>
<p><u>제7조의1</u>(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처리과정등의 감시활동에 대한 활동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거나 주민지원 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p>	<p><u>제7조의2</u>----- ----- ----- ----- ----- -----.</p>
<p>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되,<u>기금운용관은 복지관광국장이</u> 되며, 분임기금운용관은 <u>자원순환과장으로</u>, 기금출납원은 청소 시설담당이 된다.</p>	<p>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 ----- ----- ----- <u>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u>----- ----- <u>업무담당과장으로</u>----- -----.</p>
<p><u>제11조</u>(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5조</u>----- -----.</p>
<p><u>제11조</u>(신 설)</p>	<p><u>제11조</u>(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시장은 <u>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u>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신 설)</p>	<p>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2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4.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아동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7.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p>②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료 감면액 또는 감면비용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신 설)</p>	<p><u>협의 결정한다.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료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u></p> <p><u>제1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u> <u>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u> <u>3. 그 밖에 당해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u>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u></p> <p><u>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u>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 받은 일부 시설인 상가시설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⑤시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⑥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제14조(신 설)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799호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2년으로 하되 재임**”을 “**3년으로 하되 연임**”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7조제3항 중 “**3분의2**”를 “**3분의1**”로 한다.

제10조제9항제1호 중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를 “**운임, 식비, 숙박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경비**”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의 지급기준에 따라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상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조직) ① (생략)</p> <p>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p>	<p>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위촉한다.</p>
<p>③ ~ ⑧ (생략)</p> <p>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 ~ ⑤ (생략)</p> <p>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u></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u>3년으로 하되 연임-----.</u></p>
<p>제6조 (해임) ① (생략)</p> <p>② <u>단장의 경우 그 해임은 제1항에 의한 단원의 해임요건을 적용하며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u></p>	<p>제6조 (해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u> 2. <u>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u> 3. <u>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 자격을 상실할 경우</u> 4. <u>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u>
<p>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 ② (생략)</p>	<p>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0조 (운영 등) ① ~ ⑧ (생략)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 7. (생략)

<신설>

③ ----- 3분의1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 (운영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1. -----
----- 운임, 식비, 숙박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 (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 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의 지급 기준에 따라 「군산시안전관리 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

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상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800호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5년 12월 31일-----. ----- -----.</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801호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 를 “지방자치법 제126조” 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3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지방자치법 제117조</u>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제2조(설치 및 관리) ----- ----- 지방자치법 제126조----- ----- ----- ----- -----</p>
<p>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2월 31일</u>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 <u>2023년 12월 31일</u>-----. ----- -----.</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802호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5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 례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2월 31</u> 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 --- <u>2025년 12월 31일</u>-----.</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803호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통근버스 운행 :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 :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 또는 교통카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4조(부담금의 경감 등) 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1과 같다.

④ 제2조제4호가목에서 정한 승용차부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영 제24조에 따라 우선 경감한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

제5조(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제6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① 제3조에서 규정한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7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 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서의 시행일은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당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승용차부제

가. 주차면 수가 50면 미만인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100분의 5 이내

나.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은 100분의 3 이내

2. 통근버스운행 : 차량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②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매월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 등 조치 사항) ① 시장은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담금을 경감받았을 경우 경감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한시적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된다.

[별표 1]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4조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부담금 경감률(%)
1. 승용차부제	가. 10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제8조제1호 예외)	10
	나. 승용차 선택적 요 일제 또는 5부제			20
	다. 2부제			30
2. 통근버스 운행		종사자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5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10
3.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	전체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월 3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10

비고.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times (1-b) \times (1-c)] \times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규모	·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교통량감축 이행프로그램 종류(해당난에 기재)

프로그램명	경감률(%)	이행계획	비고
계			
승용차부제	10부제	통제방법 :	
	5부제	통제방법 :	
	2부제	통제방법 :	
	요일제	통제방법 :	
통근버스 운영	5	운행대수 : 대 이용자수 : 명	출근 또는 퇴근 시만 운영
	10	운행대수 : 대 이용자수 : 명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대중교통 이용 지원	10	1인당 월 만원 (전체 만원)	

3.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 기간 : . . .부터 . . .까지

4. 교통량감축 세부이행계획 : 자체이행계획서 별도 작성 첨부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위
성 명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담금 경감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규모	·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경감 신청내역

프로그램명		경감률 (%)	당초계획	신청(실적)	비고
계					
승용차부제	10부제	10			
	5부제	20			
	2부제	30			
	요일제	20			
통근버스 운영		5			출근 또는 퇴근 시만 운영
		10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대중교통 이용 지원		10			
기 타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성명

직위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부담금 경감률결정 통보서(제10조제2항 관련)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장규모	·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경감비율 결정사항

프로그램명	경감률(%)	신청	결정 경감비율	비고
계				
승용차부제	10부제	10		
	5부제	20		
	2부제	30		
	요일제	20		
통근버스 운영	5			출근 또는 퇴근 시간 운영
	10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대중교통 이용 지원	10			
기 타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804호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5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특별회계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2월 31</u>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p>	<p>제16조(특별회계 존속기간) ----- <u>2025년 12월 31일</u>----- ----- ----- -----.</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805호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람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 1. 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 2.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람료의 반환은 당일 납부한 관람료에 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미 납부한 유물의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한다.

- 1. 유물에 대한 촬영 및 복사 전 이용자가 유물의 이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
- 2.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유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관람료) ① (생 략) <u>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박물관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생 략) <u><신 설></u></p>	<p>제7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u>제7조의2(관람료의 반환) ① 이</u> <u>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u> <u>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u> <u>다.</u> 1. <u>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u> <u>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u> 2. <u>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u> <u>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u> <u>인하여 관람이 취소된 경우</u>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람료 <u>의 반환은 당일 납부한 관람료</u> <u>에 한정한다.</u></p>
<p>제8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 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p>	<p>제8조(무료관람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p>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중 선
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
는 자 1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
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신 설>

3. ~ 8. (생 략)

② (생 략)

제25조(유물의 이용)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 15.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유물의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미 납부한 유물의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유물에 대한 촬영 및 복사 전 이용자가 유물의 이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유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군산시청원경찰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규칙 제721호

군산시청원경찰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청원경찰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청원경찰복무규칙**” 을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따라 휴가일수는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4조 및 제20조의**” 를 “**다른 휴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관련**”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계산)**” 을 “**(경력기간의 계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경력(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이법**” 을 “**이 규칙**”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산시장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하고**” 를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을 준용하고,**”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청원경찰복무규칙</u></p> <p>제9조(휴가) ① (생 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라 휴가일 수는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0조(<u>근무시간의 계산</u>) 봉급 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한다. <u><단서 신설></u></p> <p>제11조(징계) ①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징계 처분한다.</p> <p>1. 법령 또는 <u>이법</u>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p> <p>2. ~ 5. (생 략)</p> <p>②징계기준은 <u>군산시징계양정</u>에 관한규칙을 준용하고 군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다.</p>	<p><u>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u></p> <p>제9조(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따른 휴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관련 -----</u> -----.</p> <p>제10조(<u>경력기간의 계산</u>) ----- ----- ----- --. <u>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경력(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한다.</u></p> <p>제11조(징계) ①----- ----- ----- ----- -----.</p> <p>1. ----- <u>이 규칙</u>----- -----</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u>지방공무원징계규칙을 준용하고, -----</u> -----.</p>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규칙 제722호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도시숲담당주사**” 를 “**업무담당 주사**”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 관리) ① ~ ④ (생략)</p> <p>⑤기금운용관을 산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u>도시숲담당주사</u>로 한다.</p> <p>⑥ (생략)</p>	<p>제5조(기금의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업무담당 주사</u>-----.</p> <p>⑥ (현행과 같음)</p>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규칙 제723호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등) ①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해당 월에 청구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지원 기간은 영업소 1개소당 최초 지원금을 지원한 월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단, 지원종료 전 자체평가 등에 의해 1회에 한하여 12개월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액은 짬뽕특화거리 지정 이후 입점영업소 1개소에 대하여 최대 월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재정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지원방법) 군산시장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자료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표1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매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사용 등에 관한 기준

I. 일반기준

1. 재정지원 사업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금의 사용은 당초 지원사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거래처가 거래내역과 관련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II. 개별기준

1. 임차비

- 가. 영업소 임차에 따라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제외한 보증금,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 나. 영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가 아닌 거주목적의 공간 임대료는 사용할 수 없다.
- 다. 신청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운영비

- 가. 영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식재료 구입비 및 영업소의 벽지, 장판, 메뉴판 등 교체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다.
- 나. 임차한 영업소에 대한 시설공사는 해당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 시설공사는 관련 전문업체로 등록된 사업자와 계약하여 사용해야 한다.

III. 집행 증빙서류

1. 증빙자료 상의 거래처 주소 및 연락처 등 기재사항 미비한 경우 사업관련 증빙자료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항 목	집행 증빙서류
영업소 임차비	• 임대차 계약서, 입금확인증
운영비	• 식재료 구입 : 입금확인증(송금증) 또는 영수증, 구입 내역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 영업소 벽지 등 교체 공사 : 결과보고서(공간 전후 증빙사진 포함),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입금확인증(송금증) 또는 영수증 등

군산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2월 16일

군산시 규칙 제724호

군산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농정과장” 을 “농정업무 담당과장”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②----- ----- ----- -----.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군산시 <u>농정과장</u>	나. ---- <u>농정업무 담당과장</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u>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u>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